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제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92 발의연월일: 2020. 12. 21.

발 의 자:장제원·이명수·김태호

서병수・이종배・윤상현

김기현 · 구자근 · 이 용

성일종 · 김정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징계부가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'국세체납 처분의예에 따라 징수'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징수 이행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므로,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징계부가금을 기한 내 미납부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환수금을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56조의2제3항).

법률 제 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6조의2(징계부가금) ①・②	제56조의2(징계부가금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	③
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	
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	
니한 때에는 징계권자(징계권자	
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	
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인	
경우 그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	
장을 말한다)는 국세 체납처분	
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	
<후단 신설>	이 경우 체납액의 징수가 사실
	상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
	는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
	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
	<u>탁한다.</u>